



축산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2)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법무법인 수호

문의

leeavocat@gmail.com
010-6742-0618

지난 칼럼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과정에서 축산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해 보았다. 요약해 보면, ①「축산법」제 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가축사육업·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③가축별 기준마리수 이하의 경우라도 각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의 축산업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리농가가 영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축산업에 해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영업보상의 요건에도 해당해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영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일반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오리농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오리를 사육했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 45조 제1호). 이러한 시간적·장소적·시설적·행정적 요건과 영리성·계속성 요건을 ‘일반영업요건’이라 한다. 여기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토지, 관계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의미하고, ‘물적시설’은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기타시설 등과 같은 가축사육시설을 말한다. 「축산법」상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등록하여 허가받은 대로 사육을 진행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45조 제2호). 하지만 애완용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축산보상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천재지변·불경기 등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일반영업요건’중 ‘적법한 장소’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다.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호 후단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육을 진행할 경우 영업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임차인’만이 영업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최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영업’의 개념에 ‘적법한 장소에서 운영될 것’이라는 요소가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①무허가건축물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사업장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부과되는 행정규제의 탈피 또는 그 영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에 대한 조세 회피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점, ②건축법상의 허가절차를 밟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허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었을 건물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여 법적 제한을 넘어선 규모의 영업을 하고도 그로 인한 손실 전부를 영업손실로 보상받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③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에 특별한 손해가 가해질 때 사회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데, 무허가건축물을 지어 위법행위를 통한 영업이

익을 누린 사람에 대하여까지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5863 판결 등 참조).

오리농가에서 축산에 대한 영업보상이 진행될 경우, 위와 같이 ‘축산업 손실보상 요건’에 더해 ‘일반영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하지만 축산보상은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영업이 아닌 사육활동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업과 차이점이 있다. 또한 가축을 이전하는 경우 가축의 가치에 매우 중요한 체중감소·산란율저하·유산 등의 손실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으며, 영업규모라고 할 수 있는 사육마리수의 변동이 크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오리농가는 감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한 강조를 통해 오리농가에 유리한 감정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
-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수의사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在)
-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의료, 보험, 식품·농림·축산, 유공)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발전대책마련 TF회의 위원
- 녹색소비자연대 건강안전운영위원(식품분야)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정회원
- 건국대학교 농식품안전인증센터 운영위원
- 서울시수의사회 지문변호사, 대한수의사회 청년소통위원